

#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9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용 대상을 세분하여 명시(안 제5조)
- 나.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
- 다. 환수조치의 정비(안 제9조)
-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생활보장과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일반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특성별 운영비

제9조 제목 “사업비 등의 환수”를 “환수조치”로 하고,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제2항 중 “11명”을 “5~15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센터 종사자의 대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u>아동 복지법</u>」 제4조 및 제52조제1항 제8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이용의 대상) (생략)</p> <p>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p> <p>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p> <p>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p> <p>4. 그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u>아동 복지법</u>」 제4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5조(이용의 대상) (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p> <p>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p> <p>3.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p> <p>4.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p> <p>5. 조손가족의 아동</p> <p>6. 한부모가족의 아동</p> <p>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p> <p>8. 맞벌이 가정의 아동</p> <p>9. 일반아동</p> <p>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p>

제7조(사업비의 지원) (생략)

<신설>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생략)

- 1. (생략)
- 2. (생략)
-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설>

<신설>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생략)
- 6. <신설>
- 6.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등

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사업비의 지원)(현행과 같음)

5. 특성별 운영비

제9조(환수조치)(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5 ~ 15명-----
- 
- 
- 
- ③ (현행과 같음)
- 6. 센터 종사자의 대표
- 7. -----
- 8. -----
-